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의 제목 “(설계승인신청)”을 “(설계승인신청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개요 및 제원”을 “개요”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주요 설계 요건
3. 구조 평가
4. 열(熱) 평가
5. 격납 평가
6. 방사선차폐 평가
7. 핵임계 평가
9. 운반용기의 유지·보수절차 및 성능점검 절차

제105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7항) 중 “법 제76조 제1항 본문의 후단에 따라 설계변경승인”을 “영 제112조의2에 따라 변경승인”으로, “변경사항”을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및 그 밖의 변경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영 제112조제5항에 따라 설계승인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90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 안전성 입증자

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92호서식”을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별지 제92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93호서식”을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별지 제93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9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9호서식, 제90호서식, 별지 제91호서식, 별지 제92호서식, 별지 제9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8조 및 제10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 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작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법 제76조제1항의 승인을 받은 자는 같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제작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제108조에 따른 제작검사 신청 전까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반용기설계승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2개월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소명	담당부서	
		담당자	
사업장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사업자분류		
	운반용기종류		

「원자력안전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용기 설계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운반용기의 설계자료 1부 2. 품질보증계획서 1부 3. 안전성분석보고서 1부 4. 성능시험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원자력안전위원회	→ 서류검토 원자력안전위원회	→ 승인서 작성·발급 원자력안전위원회	→ 승인서 수령 신청인

운반용기설계변경승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2개월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소명	담당부서	
		담당자	
	사업장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사업자분류		
	설계승인 번호		
	승인일자		
	설계변경 사유		

「원자력안전법」 제7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제8항에 따라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용기 설계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허가신청서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및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 각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원자력안전위원회	→	서류검토 원자력안전위원회	→	승인서 작성·발급 원자력안전위원회	→	승인서 수령 신청인

운반용기설계승인 유효기간연장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소명	담당부서	
		담당자	
	사업장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사업자분류		
	설계승인 번호		
	최초승인일자	만료일자	

「원자력안전법」 제7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제7항에 따라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용기 설계승인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설계 안전성 입증 자료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원자력안전위원회	→ 서류검토 원자력안전위원회	→ 승인서 작성·발급 원자력안전위원회	→ 승인서 수령 신청인

제 호

방사성물질등운반용기설계승인서

상 호			
소 재 지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설계승인번호		외국승인번호	
운반용기형식		도 면 별 첨	
방사성내용물			
승 인 조 건			
최초승인일자		만 료 일 자	

위와 같이 「원자력안전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제3항에 따라 방사성 물질등 운반용기의 설계승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직인

운반용기제작검사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60개월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소명			
	사업장소	전화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사업자분류	설계승인번호		
	운반용기종류	제작검사수량		

「원자력안전법」 제7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용기 제작검사를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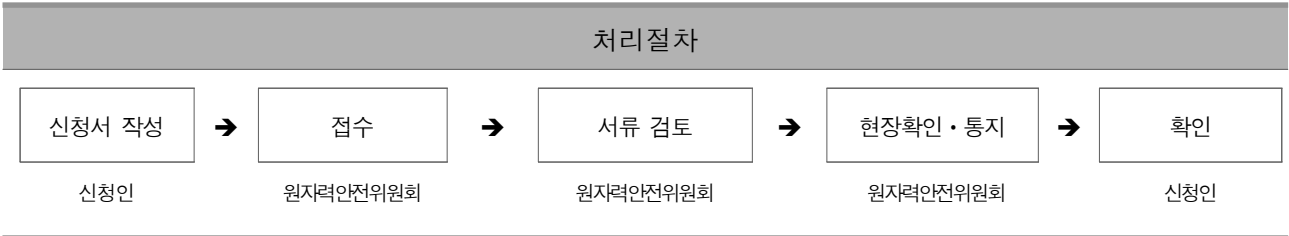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제작방법에 관한 설명서 1부 2. 제작설비 명세서 1부 3. 시험방법·검사방법에 관한 설명서 1부 4. 시험·검사시설 또는 검사기기 명세서 1부	수수료 없음
------	--	-----------



운반용기사용검사신청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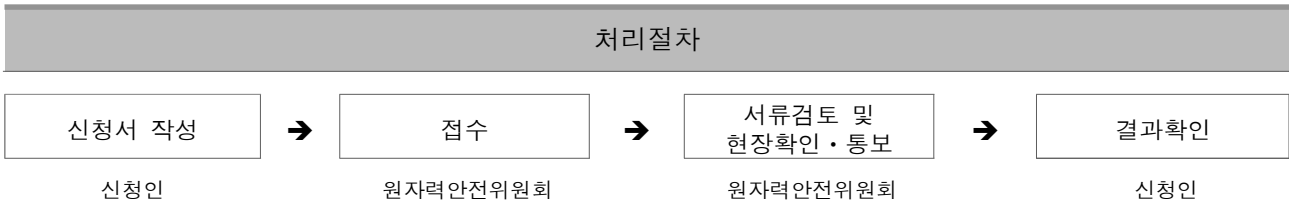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6개월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소명		
	사업장소	전화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사업자분류	설계승인번호	
	운반용기형식	용기일련번호	

「원자력안전법」 제7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9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용기의 사용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운반용기의 보수명세서 1부(보수한 경우에 한합니다) 2. 운반용기의 자체점검보고서 및 점검절차서 1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3조제3항에 따른 서면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5조(<u>설계승인신청</u>) ① (생략)	제105조(<u>설계승인신청등</u>)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제작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는 제108조에 따른 제작검사 신청 시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삭 제>
③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 ----- -----.
1. 운반용기의 <u>개요 및 제원</u>	1. ----- <u>개요</u>
2. 운반용기의 <u>재질 · 구조 · 열 · 격납 · 차폐 및 핵임계의 평가결과</u>	2. <u>주요 설계 요건</u>
<신 설>	3. <u>구조 평가</u>
3. (생략)	8. (현행 제3호와 같음)
4. 운반용기의 <u>시험 및 유지 · 보수절차</u>	4. <u>열(熱) 평가</u>
<신 설>	5. <u>격납 평가</u>
<신 설>	6. <u>방사선차폐 평가</u>
<신 설>	7. <u>핵임계 평가</u>
<신 설>	9. <u>운반용기의 유지 · 보수절차 및 성능점검 절차</u>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영 제112조제5항에 따라 설계승인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

⑦ 법 제76조제1항 본문의 후단에 따라 설계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0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8조(운반용기의 제작검사) ① 영 제113조제1항에 따라 운반용기의 제작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품질보증계획서(제105조제2항에 따라 설계승인 신청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 5. (생략)

②·③ (생략)

제109조(운반용기의 사용검사) ① 영 제113조제2항에 따라 운반용기의 사용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

는 자는 별지 제90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 안전성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영 제112조의2에 따라 변경승인-----

-----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및 그 밖의 변경사항---

제108조(운반용기의 제작검사) ① -----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별지 제92호서식-----
-----.

1. <삭 제>

2. ~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9조(운반용기의 사용검사) ① -----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60일 전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략)

② ~ ⑤ (생략)

까지 별지 제93호서식-----
-----.

1.·2.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